|  |
| --- |
|  |
| **- 글로벌비즈니스 기업매칭 -** **『해외투자유치활동 지원 사업』 운영방침** |
|  |

**2022. 3.**



****

**1. 개 요**  **1**

**2. 사업신청 및 선정**  **3**

**3. 협약 및 지원금 지급** **7**

**4. 지원금 집행** **12**

**5. 정산 및 보고서 제출** **15**

**6. 기타사항** **16**

**1. 개요**

**(1) 목적**

◦ 본 지침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경기도로부터 수탁받아 수행하는 글로벌비즈니스 기업매칭 사업 내 ‘해외투자유치활동 지원 사업’ 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용어의 정의**

◦ “관리기관”이라 함은 경기도를 말함

◦ “전담기관”이라 함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협약체결, 지원금의 집행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말함

◦ “평가위원회”라 함은 지원대상 기업의 선정 및 평가, 사업의 중단 및 실패 판정, 지원금의 환수 등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를 말함

◦ “지원기업”이라 함은 경기도내 중소기업 및 외투기업으로서 본 해외투자유치활동 지원 사업 신청 기업 중 심사를 통해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기업을 말함

**(3) 추진체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기관(경기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담기관(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평가위원회(내‧외부전문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원기업(신청기업 중 선정기업) |  |  |  |  |  |  |  |  |  |  |  |  |  |  |  |  |  |

◦ 관리기관

- 사업의 기본계획 및 예산수립, 총괄조정

- 사업계획서 심의 검토

◦ 전담기관

- 사업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사업 협약 체결

- 사업 신청서 접수, 검토 및 평가

- 지원기업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접수 및 검토

- 선정 및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 지원금 지급 및 정산검토

-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리기관장이 요청하는 사항

◦ 평가위원회

- 지원기업의 선정, 우선순위 조정 및 선정평가

- 지원기업의 사업수행평가 및 성과보고회 평가

-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담기관장과 협의한 사항

◦ 지원기업

- 해외투자유치활동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 선정사업에 대한 지원금 집행과 대응자금(자부담) 부담 등

- 사업의 수행, 최종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담기관장이 요청하는 사항

**(4) 추진절차**

|  |  |  |  |  |
| --- | --- | --- | --- | --- |
| **구 분** |  | **일 정** |  | **추 진 주 체** |
|  |  |  |  |  |  |  |  |  |  |  |  |  |
| **사업공고** |  | 3월 |  | 경기도ㆍ경과원 |
| ⇩ |  |  |  |  |  |  |  |  |
| **신청기업 사업 중복지원 여부 검토** |  | 4월 |  | 서류 검토 |
| ⇩ |  |  |  |  |  |  |  |  |
| **선정평가 (1차 서면평가)** |  | 4월13일(예정) |  | 평가위원회(서면평가) |
| ⇩ |  |  |  |  |  |  |  |  |
| **선정평가 (2차 발표평가)** |  | 4월18일(예정) |  | 평가위원회(발표평가) |
| ⇩ |  |  |  |  |  |  |  |  |
| **사업협약 및 지원금 신청** |  | 4월~5월 |  | 선정기업ㆍ경과원 |
| ⇩ |  |  |  |  |  |  |  |  |
| **사업추진** |  | ~ 11월 |  | 지원기업ㆍ경과원 |
| ⇩ |  |  |  |  |  |  |  |  |
| **사업결과보고 제출** |  | 11월 |  | 평가위원회 |

**2. 사업신청 및 선정**

**(1) 신청대상**

**󰊱 신청자격**

◦ 사업 공고일 기준 경기도내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이 소재한 중소기업\* 또는 외투기업

**\* 최근 3년간 매출액 100억 이상을 달성한 기업**

◦ 외투기업의 경우, 사업 공고일 기준 외투기업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경기도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거나 경기도 내 사업장 이전 추진 확약서 제출 기업

※ 협약기간 내 사업장 이전 불이행 시 지원금 불인정 및 환수 조치됨.

**󰊲 가 산 점**

◦ 적용기준 : 60점 이상 과제에 한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한 기업에 적용

◦ 적용대상(유리한 1건에 대하여 최대 5점 적용)

|  |  |
| --- | --- |
| 구 분 | 가 점 항 목 |
| 5점 | [다음 각 사업의 수행이력이 있는 기업(2019년 이후))· 글로벌 기업 연계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러시아 혁신기술상용화 사업· 글로벌비지니스 기업매칭사업· 경기도 유턴기업 지원사업 |

**󰊳 신청내용**

◦ 해외투자유치 및 해외 기술협력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업의 실질 비용에 대한 비용지원

**󰊴 신청제한**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중인 기업

◦ 동일 과제로 정부 및 지자체의 “해외투자유치”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

※ 동일 과제에 대한 심사는 평가위원회 결정에 따름

◦ 정부지원사업 및 유관기관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기업

◦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에 따른 법위반기업

◦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사업지원 제외업종 총괄표**[별표 1]**에 해당하는 업종

※ 위 사유(신청제한 사유)에 해당됨이 사후 발견 시 협약파기 등 불이익의 책임은 신청(지원)기업에게 있음

**󰊵 사업신청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제1호 서식] 및 사업계획서[제2호 서식]**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증 – 각 1부**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1부**

**◦ 보유기술에 대한 설명자료 및 자격증 사본 등(해당자에 한함) - 각 1부**

**◦ 개인(기업)정보제공 및 조회 동의서[제3호 서식] - 1부**

**◦ 기업의 법위반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제4호 서식] -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각 1부**

**◦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제5호 서식] - 1부**

**󰊶 유의사항**

**◦ 사업신청 유의사항**

- 신청서류는 지정서식을 이용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기업은 자동으로 선정 취소되며, 관련법에 따라 고발되고 지원금은 환수됨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평가(지원금 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지원목적 외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거나 부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됨

- 사업평가결과 지원금 횡령, 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 시 차년도 사업 지원 제한됨

- 심사결과와 관련된 평가사항은 비공개 원칙임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기업 제재조치**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융·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 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 법위반기업 지원 제한기준**

- (지원 제한 대상) 공정·노동·환경·납세 등 4개 분야 11개 법률 위반 기업

- (위반사실 조회기간) 사업공고일 기준 2년 이내 법위반 사실 적용

- (사업참여 제한조건) 사업자 선정 후 과거 법위반사실 확인시(1회 이상) 사업 취소·보조금 반환 및 3년간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1년 3월 25일(금) ~ 4월 7일(목) 17:00,** 총 2주간

◦ 모집공고 : **이지비즈(www.egbiz.or.kr)**

◦ 신청방법 : 신청서류 작성 후 내방 또는 우편접수

◦ 제 출 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5번길 12(삼평동) 4층**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클러스터육성팀 민현아 대리**

**(3) 문의처**

◦ 전 화 : 031-776-4804, 민현아 대리

◦ 이메일 : hyeonamin@gbsa.or.kr

**(4) 선정절차**

◦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기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열어 1차 서류심사(신청기업 소재지, 지원금 항목 적정성 등), 2차 발표평가(사업계획의 적정성 등)를 실시

◦ 선정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 통보

**(5) 1차 심사(서면심사)**

◦ 평가위원 : 평가위원회(내·외부 전문가 등 5인 내외) 개최

◦ 평가방법 : 사업계획서 서류 검토 및 평가

◦ 선정기준 : 평균 60점 이상이며 고득점 순 2차 대면평가 추진

◦ 평가기준 : 신청기업 소재지, 지원금 항목 적정성 등

**(6) 2차 심사(발표평가)**

◦ 평가위원 : 평가위원회(내·외부 전문가 등 5인 내외) 개최

◦ 평가방법 : 기업별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 선정기준 : 평점 6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최종선정

◦ 평가기준

|  |  |
| --- | --- |
| 구 분 | 심 사 기 준 |
| 계획의 타당성 | · 과제 수행목적의 필요성· 과제 수행계획의 구체성· 과제 수행방안의 적정성· 사전 준비 충실도(시장분석, 전략설정 등) |
| 투자유치 가능성및 전문성 | · 사업제휴, 투자유치 가능성 관련 경쟁성 확보· 관련 기술 전문성 및 실행력 보유 여부· 국제인증, 지재권 보유 등 차별성 여부 |
| 사회기여 | · 경기도 내 지역사회 발전 기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업의 노력(ESG) |

**3. 협약 및 지원금 지급**

**(1) 협약의 체결**

◦ 선정기업은 선정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되어 통보한 사항이 반영된 수정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전담기관과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함

◦ 예비선정자가 지원기업으로 전환되어 협약을 체결할 경우, 당해년도 동일 차수 지원기업 협약완료일을 준용하여 지원

◦ 지원금 집행계획서는 전담기관에 승인을 득한 후에 진행하여야 함(협약변경시에도 승인 후 적용됨)

◦ 전담기관은 선정기업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음

- 협약 전 지원기업이 사업수행을 포기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기타 사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 선정기업이 특별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협약체결을 못하는 경우 전담기관은 우선순위의 후보대상자를 협약체결 대상자로 통보함

**(2) 협약 변경**

◦ 지원기업은 선정 과제 및 지원금 집행계획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전담기관에게 변경승인 요청서[제9호 서식] 및 변경된 사업계획서[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협약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음

◦ 전담기관은 변경승인 요청서를 검토하여 변경된 내용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지원기업에게 통보하며(필요시, 외부전문가의 검토 가능), 사업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약을 변경할 수 있음

**(3) 협약의 해지 및 해약**

◦ 전담기관의 장은 아래의 사유가 발생한 지원기업에 대해서는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추후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위반한 경우

- 협약 후 타 사업 참여를 위하여 협약을 포기하는 경우

- 허위로 협약을 체결하거나 지원기업이 제출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사업기간 중 지원 제외대상으로 판단되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 지원기업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 참여를 포기할 경우, 사업 참여 포기신청서[제10호 서식]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4) 제재 및 환수**

◦ 전담기관은 지원기업의 사업 중도포기, 사업 중단, 제출한 서류의 허위 판명, 타 기관 중복수혜 등으로 협약의 해약 및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가위원회를 열어 지원기업에 대한 제재와 지원금 환수에 대해 결정

◦ 평가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의 사유의 정당성, 고의성, 불가항력성 등을 근거로 지원기업에게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거나 지급예정인 지원금의 지급중단을 결정할 수 있음

**(5) 지원금 교부**

**◦ 전담기관은 최종 선정되어 협약체결한 기업에게 사업계획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한 지원금을 가감 반영하여 교부함**

◦ 지원기업은 지원금 계좌를 별도 개설ㆍ관리하여야 함

**(6) 지원금 교부 신청서류**

**󰊱** 지원금 교부신청서[제7호 서식]

◦ 책임자 성명, 연락처와 주소,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총 지원금 및 교부신청 금액, 사업기간, 기타 정하는 사항 등

◦ 필요시 자부담 포함

**󰊲** 사업계획서[제2호 서식], 협약서[제6호 서식], 청렴서약서[제8호 서식] : 각1부

◦ **(사업계획서)** 사업개요, 지원기업의 자산과 부채, 사업 수행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비목별 구체적 제시), 사업추진 효과 등

◦ **(협약서)** 기관명, 총 지원금 등 작성, 사업수행을 위한 확약

**󰊳** 지원금 관리 예금통장(전용계좌) 사본 : 1부

◦ 통장은 지원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별도 통장 개설

◦ 통장은 법인일 경우 법인 명의로, 개인사업자일 경우 대표자 성명의 통장으로 개설 ※ 다른 명의 혼용 및 대표자 개인 통장 사용 불가

**󰊴** 지원금 결제전용 체크카드(보조금 전용) 사본 : 1부

◦ 체크카드는 법인일 경우 법인 명의로, 개인사업자일 경우 대표자 명의로 보조금 관리통장과 연계하여 발급 ※ 전용 카드 발급

**󰊵**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방세완납증명서 및 국세완납증명서 : 1부

◦ 지방세완납증명서 : 전국 기초자치단체 지방세 관리부서에서 발급

◦ 국세완납증명서 : 전국 기초자치단체 관할 세무서 등에서 발급

※ 지원금 교부신청일 현재 당해연도 발급분이고 3개월 이내 발급된 지방세완납증명서 및 세외수입 완납 확인 서류(간편조회 내역서)

**󰊶** 이행보증보험증권 : 1부

◦ 지원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회수가산기간 3개월)

**(7) 지원금 구성내역**

|  |  |  |  |
| --- | --- | --- | --- |
| 구분 | 지원내용(예시) | 한도액 | 비고 |
| 지적재산권 및 인증비용 | ∙ 지적재산권(국내외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비 및 등록비 지원 등∙ 시험성적서 수수료, 인증 수수료 등  | 총 사업비의 50%이내 | 각 항목 당 지원금 한도액을 총 지원금의 50% 이내로 함 |
| 홍보 및 투자유치활동 | ∙ 기업소개 및 투자유치를 위한 동영상\* 및 카달로그(영문 포함) 제작비, 번역비 등\* 동영상 제작비 최대 500만원 한도(한도 외 자비부담) | 총 사업비의 50%이내 |
| 해외진출 및 투자유치컨설팅 | ∙ 해외진출, 기술도입 및 투자금 도입을 위한 컨설팅, 멘토링, 신규 해외 투자 및 증자 관련 법무비용∙ 신규 해외 투자 및 증자 관련 법무비용, 대행비, 컨설팅비(환경컨설팅 등) | 총 사업비의 50%이내 |
| 운영비 | ∙ 사업비 사용분 정산에 따르는 회계법인 정산 비용∙ 지원금 100%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료 지원 |  |  |
| 기타 | ∙ 위에서 명기되지 않았으나, 투자유치를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비용은 선정 심의를 통해 지급여부 판단**(가능 예시)** 투자유치활동을 위한 해외여비(항공료), 해외 전시회 참여를 위한 부스임차비, 시설장치비**(불인정 예시)** 해외투자유치활동을 위한 일반체류경비(식비, 숙박비 등)  | 총 사업비의 50%이내 | ∙ 선정절차에서 타당성을 판단해 지급결정 가능하나 비용과 규모는 심사결과에 따라 조정되며 정산 시 당초 승인 내용과 다르게 사용된 경우 불인정 및 환수 조치 |

**※ 지원금은 “해외투자유치활동 지원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항목으로 신청 및 지원하며, 또한 부가세 등 제세공과금은 지원업체가 자부담하여야 함**

**(8) 지원 세부내역**

**󰊱 지적재산권 지원**

◦ 지원금액 : 총 사업비의 50% 이내

◦ 지원내용 : 사업계획서와 관련된 지적재산권 출원에 대하여 지원이 되며, 협약체결 이후에 진행된 건에 한함.

|  |  |
| --- | --- |
| 구분 | 지원내용 |
| 국내특허 | ∙ 출원/등록에 따른 관납료 및 대행기관 수수료 등∙ 우선심사비용, 선행기술조사비용 등 |
| 국제특허 | ∙ 출원/등록에 따른 관납료 및 대행기관 수수료 등∙ 송달료, 국제출원료, 번역료 등 |
| 실용신안디자인상표 | ∙ 출원/등록에 따른 관납료 및 대행기관 수수료 등∙ 우선심사비용, 선행기술조사비용 등 |
| 시험성적서 및 인증 | ∙ 출원/등록에 따른 대행기관 수수료 등∙ 심사비용, 인증시험비용 등 |

**󰊲 홍보 및 투자유치활동**

◦ 지원금액 : 총 사업비의 50% 이내

◦ 지원내용 : 참여기업의 기업소개를 위한 동영상 제작 비용

|  |  |
| --- | --- |
| **구분** | **지원내용** |
| 동영상제작지원 | ∙ 해외투자유치를 위한 외국어 기업소개 동영상 제작비용 지원- 최대 500만원 한도 내 지원(한도 외 자비부담)- 영문자막 포함  |
| 홍보물 제작지원 | ∙ 해외투자유치를 위한 카달로그, SNS홍보물 등 제작비 지원- 영문자막 포함 |

**󰊳 컨설팅 지원**

◦ 지원금액 : 총 사업비의 50% 이내

◦ 지원내용 : 참여기업의 해외투자유치를 위한 컨설팅(멘토링) 비용 지원

|  |  |
| --- | --- |
| **구분** | **지원내용** |
| 컨설팅및 멘토링 | ∙ 해외투자유치를 위한 참여기업의 컨설팅 및 멘토링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 멘토링지원 | ∙ 기업가치평가 등 관련 법률 자문료 등 실소요되는 비용 지원 |

**󰊴 운영비 지원**

◦ 지원내용 : 사업계획서에 근거하여 사업 운영비 지원

|  |  |
| --- | --- |
| 구분 | 지원내용 |
| 운영비지원  | ∙ 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수수료 필수∙ 이행(지급)보증보험료 지원- 지원금 100%에 대한 보증보험 필수∙ 사업관련 사무용품, 우편료 등  |

**(9) 지원금 신청 및 지급**

◦ 지원금은 사업협약 완료 후, 지원금 신청서류를 제출한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예정

**4. 지원금 집행**

**(1) 지원금 집행 시 유의사항**

◦ 지원기업은 이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사용 및 관리하여야 하며, 정산 시 정산보고서와 함께 사업비 사용실적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전담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지원금 관리를 위하여 개설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는 기업 명의의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며, 담보설정이 되지 않는 보통예금 등으로 별도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좌를 변경할 수 없음

◦ 본 사업과 관련 없는 건축ㆍ기계 등 시설ㆍ수선비, 시설부대비, 전신ㆍ전화설비 등 자본적 경비와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 공과금 등 업체운영과 관련된 일반경비 및 연구용역비로는 사용 할 수 없음

◦ 전담기관은 지원기업이 제출한 증빙자료가 미비할 시에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전담기관은 필요시 현장방문을 통하여 물품 및 시제품 등 지원금 사용실태를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지원기업은 협약종료일 30일 전까지 지원금을 집행하고 사업기간 종료 전까지 회계법인 정산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지원기업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라, 사업비의 지출시 전자세금계산서 처리(법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2011년부터 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하여 2012년부터 적용됨)를 원칙으로 하며,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운 경우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함

※ 복식부기의무자란 ? 현행 세법(법인세법 제112조, 소득세법 제160조)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때의 사업자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하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법인과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사업자 등이 해당 됨

◦ 지원기업은 용역수행업체 선정시 다음의 항목을 준수하여야 함

- 지원기업은 추진과제와 **연관된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용역수행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 지원기업은 본인과 민법상 **친ㆍ인척관계**에 해당하는 용역수행업체는 선정할 수 없음. 또한 전담기관은 필요시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확인 할 수 있음

- 지원기업은 업력이 **6개월 이상** 된 용역수행업체(견적서 발급일 기준)를 선정하여야 함

◦ 지원기업이 전담기관에 지원금 지급을 요청할 시에는 지원금 항목에 따른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전담기관은 지원기업이 제출한 증빙자료가 미비할 시에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전담기관은 필요시 현장방문을 통하여 물품 및 시제품을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 부가세 및 관세, 송금수수료 등 사후환급금에 대해서는 지원금 지급을 제외함

◦ 전담기관은 협약기간 중 지원기업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약된 경우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음

◦ 지원기업은 지원금 100%에 대해 협약 전 이행(지급)보증보험 가입하여야 함

※ 발급수수료는 사업비로 인정

◦ 협약사업비는 평가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선정 이후 지원금의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일괄 또는 분할지급)은 예산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

**(2) 지원금 사용 증빙자료**

◦ 구매 시 견적서, 거래명세서(모델명, 사이즈, 제작사양 등 명확히 기재), 계약서(금액, 기간, 계약내용 등)

※ 100만원 이상일 경우, 비교견적서 첨부

◦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사본, 입금계좌 사본(참여자, 용역사 등)

◦ 사업자등록증, 계좌사본(용역/제작/구매업체)

◦ 온라인 입금증(이체확인증)

※ 입금증에는 예금주 및 계좌번호(출금계좌 및 입금계좌)가 명확히 명시되어야 함

◦ 사진(구매물품, 공사과정, 설치 전･중･후, 최종완료 등)

◦ 최종결과물(시제품 및 완성품, 시안, 컨셉도면, 설계도면 등)

◦ 임대계약서, 관리비 내역, 해당업체 사업자등록증, 수수료 입금확인증

**5. 정산 및 보고서 제출**

**(1) 완료보고서 제출**

◦ 지원기업은 협약종료일 15일전까지 **추진실적 및 사업비 정산보고서 [제11호 서식]** 등을 전담기관(또는 지정된 회계법인)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은 필요시 추가자료 및 자료수정을 요청할 수 있음

**(2) 최종평가 및 사후관리**

**◦ 전담기관은 평가위원회로 하여금 지원기업에 대한 최종평가를 실시함**

◦ 전담기관은 지원기업의 성공적인 해외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완료 후(완료 후 2년 이내)에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음

**6. 기타사항**

◦ 이 운영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담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정산결과는 우선 전담기관의 장이 통보한 내용에 따르되 최종 정산결과는 관리기관에서 확정하며, 이때 불인정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반납 조치함

◦ 지원금 정산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업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으로 집행한 경우

- 다른 과제 또는 사업에 전용하여 사용한 경우

- 전담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한 경우

- 지원금을 협약기간 이전 또는 종료 후 집행한 경우, 다만, 전담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

|  |  |  |
| --- | --- | --- |
|  | **< 서식 및 평가지표 >** |  |
|  |  |
| **☞ 사업 신청시 제출서류****【제1호 서식】 : 사업신청서****【제2호 서식】 : 사업계획서****주소지 확인을 위한 사업자등록증, 기업신용평가보고서(최근2년간) 등****☞ 협약체결시 제출서류****【제6호 서식】 : 사업추진 협약서** **【제7호 서식】 : 지원금 교부신청서****【제8호 서식】 : 지원금 청렴사용서약서****지원금 100%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 증권 사본****전용통장, 체크카드 사본****사용인감계****☞ 변경 및 포기시 제출서류****【제9호 서식】: 변경승인 요청서****【제10호 서식】: 사업참여포기신청서****☞ 완료보고시 제출서류****【제11호 서식】: 사업추진 실적 및 정산보고서****☞ 참고****【별표1호】:사업지원 제외업종 총괄표** |

**[제1호 서식]**

|  |
| --- |
| 『해외투자유치활동 지원 사업』 신청서  |

|  |  |  |  |  |
| --- | --- | --- | --- | --- |
| 기본정보 | 회사명 |  | 대표자 |  |
|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  | 설립일/직원수 | / |
| 홈페이지 |  | 소재지(주소) |  |
| 사업 책임자정보 | 성명 |  | 직위 |  |
| 연락처 | 전화 |  | 팩스 |  |
| E-mail |  | 휴대전화 |  |
| 과제명 |  |
| 신청현황 | 구 분 | 세부내용 | 신청금(단위 : 원) |
|  |  |  |
|  |  |  |
|  |  |  |
|  |  |  |
| 신청금 합계(단위 : 원) |  |
|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2. 회사소개서(양식불문) 1부3. 사업자등록증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중소기업확인증(해당시) 1부4. 보유기술에 대한 설명자료 등(해당시) 1부5. 개인(기업)정보제공 및 조회 동의서 1부 | 6. 기업의 법위반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1부7. 기업의 법위반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8.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9. 최근 1년간 재무제표 1부10. 기업신용평가 보고서(유효기간 내) 1부 |
| “해외투자유치 지원 사업”의 모집공고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본 신청서의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을 취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20 년 월 일**신청기업인 : (인)****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귀하** |

**[제2호 서식]**

|  |
| --- |
| 『해외투자유치활동 지원 사업』 계획서 |

**1. 기본현황**

|  |  |  |  |  |
| --- | --- | --- | --- | --- |
| 기본정보 | 회사명 |  |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  |
| 대표자 | ㅇ 이름 : ㅇ 주요이력-- |
| 재무현황(최근3년간) | 연도 | 총자산 | 자기자본 | 부채 | 부채비율 | 매출액 | 당기순이익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요 연혁 | 년 월 | 내 용 |
|  |  |
|  |  |
|  |  |
| 과 제 명 |  |

**2. 주요 연혁(실적)**

|  |
| --- |
| ㅇ 회사의 주요연혁ㅇ 해외투자유치 주요 실적 등 |

**3. 인력 및 조직 현황**

|  |
| --- |
| ㅇ 현재 인력구성 현황 및 조직구성ㅇ 사업 추진의지, 역량 및 사업화를 위한 네트워크(기술, 자금, 마케팅 등) 보유 현황 등 |

**4. 신청과제 추진목적 및 배경**

|  |
| --- |
| ㅇ 신청과제 관련 비즈니스의 국내외 기술 및 시장현황 ㅇ 신청과제 관련 제품 또는 서비스의 성장성 및 전망ㅇ 신청과제를 추진하게 된 이유, 필요성, 긴급성 등 |

**5. 신청과제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ㅇ 신청과제 추진을 위한 활동계획ㅇ 기업 내 참여조직 및 인력현황 등 기재ㅇ 자금조달계획 및 인력수급계획 등ㅇ 마케팅전략, 추진일정 및 절차 등

|  |  |  |  |  |  |
| --- | --- | --- | --- | --- | --- |
| **추진업무** | **M** | **M+1** | **M+2** | **M+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해외투자유치 지원사업을 통한 기대효과**

|  |
| --- |
| ㅇ 신청기업의 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사업의 국내외 예상 점유율 ㅇ 신청기업의 제품 또는 서비스의 적합성(법, 제도 등) 및 차별성, 독창성ㅇ 사업(제품, 서비스)의 수익모델 및 수익성, 시장성ㅇ 관련 사업 추진에 의한 기대효과 등 |

**7. 지원금 활용계획 (신청항목별로 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요예산 및 지원신청액(예시) >o 신청내역 개요

|  |  |  |
| --- | --- | --- |
| 구 분 | 세부 내용 | 신청금(단위 : 원) |
| 지적재산권 지원 |  | 3,000,000 |
| 동영상 제작지원 |  | 5,000,000 |
| 신청금 합계(단위 : 원) | 8,000,000 |

o 지적재산권 지원금 활용계획- 예상비용 및 활용방안 기술o 동영상 제작지원 지원금 활용계획- 예상비용 및 활용방안 기술※ 유의사항o 지원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가능한 적정예산으로 편성o 포괄적 예산편성 불가. 즉,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 편성불가(각 비목별 구체적 산출근거 제시)o 지원기업 운영비 등 목적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경비와 자본적 경비 편성불가-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비, 공과금 등 단체운영 경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설비비, 수선비, 자산취득비 등 자본적 경비- 이웃돕기성금, 진료비 등 현금성 지출 경비- 차량 유지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o 동영상 제작비용은 최대 500만원 한도로 편성 가능(한도 외 자비부담) |

**[제3호 서식]**

개인(기업)정보 제공 및 조회 동의서

|  |
| --- |
| **□ 개인(기업)정보 수집 및 이용**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해외투자유치활동 지원 사업 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기업)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개인(기업)정보를 제공받는 자>**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해외투자유치활동 지원 사업 담당부서**<개인(기업)정보의 이용 목적>**해외투자유치활동 지원 사업 신청 시 신청자격 검토, 중복지원 검토, 선정평가 진행, 선정 후 협약진행, 협약 후 사업운영, 협약 종료 후 사후관리 등**<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기업)정보의 항목>**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일반전화번호, 소속회사(직위), 이메일, 주소, 학력 및 경력사항, 신청과제명, 사업개시일,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실무담당자 인적사항 등**<개인(기업)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신청일로부터 협약 종료 후 5년까지**<개인(기업)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신청자는 개인(기업)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기업)정보 수집을 거부하실 경우 해외투자유치활동 지원 사업 신청자격 검토, 평가, 선정, 협약, 사업운영, 사후관리 등이 불가능하므로 사업신청이 완료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고유식별정보 수집 동의**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해외투자유치활동 지원 사업 운영을 위해 신청자격 검토, 중복지원 검토, 선정평가 진행, 선정 후 협약진행, 협약 후 사업운영, 협약 종료 후 사후관리 등의 목적으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 --- |
| **□ 제3자 제공 동의**해외투자유치활동 지원 사업은 사업신청, 신청자격 검토, 평가, 선정, 협약, 사업운영, 사후관리 등을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수집한 개인(기업)정보는 아래의 내용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개인(기업)정보를 제공받는 자>**- 타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신용정보조회기관(기업)**<개인(기업)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타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지원사업 중복지원 검토- 신용정보조회기관(기업) : 신청자의 신청자격 검토를 위한 신용정보 조회**<제공하는 개인(기업)정보의 항목>**- 타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과제명, 내용 등 중복지원 검토에 필요한 항목- 신용정보조회기관(기업)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신용정보조회에 필요한 항목**<개인(기업)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타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신청일로부터 중복지원 검토 종료 시까지- 신용정보조회기관(기업) : 신청일로부터 신청자격 검토 종료 시까지**□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20 년 월 일**지원기업명 : (인)****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귀하** |

**[제4호 서식]**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 --- |
|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 1. 개인 및 기업 수집 정보

|  |  |  |  |
| --- | --- | --- | --- |
| 기업(단체)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 소재지 |  |
| 대표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법위반사실확인서 |  |

2. 개인정보 수집 기관 : 경기도지사 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3.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  |
| --- | --- |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기업(단체)명, 기업(단체) 사업자등록번호, 기업소재지(주사무소, 영업소, 생산시설 소재지), 대표자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위반사실확인서 |
| 개인정보 수집 및이용목적 |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거 법위반 사실확인 |
| 개인정보 보유 및이용기간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은 당해연도 사업종료시까지임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4.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  |
| --- | --- |
| 제공목적 | 기업경영활동 중 발생된 법위반사실 확인 |
| 제공항목 | 기업(단체)명,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 제공기관 |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위반○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지방청)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환경부, 관할 시군 환경부서)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위반○ (세무서, 시군)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위반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5. 기타사항 : 상기 목적 이외에는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 하지 않습니다. |
|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2022년 월 일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귀하 |

**[제5호 서식]**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인서

|  |
| --- |
|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
| 1. 개인 및 기업 수집 정보

|  |  |  |  |
| --- | --- | --- | --- |
| 기업(단체)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 소재지 |  |
| 대표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2. 법위반 사실 확인 및 유의사항

|  |  |
| --- | --- |
| 법위반 여부 사실 관계 확인사항 | 확인 |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위반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 |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지방청)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 |
| (환경부, 관할 시군 환경부서)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위반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 |
| (세무서, 시군)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위반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 |
| (법위반사실 확인) 법위반기업 지원제한 기준 고시 관련 법률 위반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 |
| 유의사항 고지 및 안내 | 동의 | 부동의 |
| 사업공모일 기준 2년이내 법위반사실이 없으며 사업자 선정후 법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선정 취소 및 사업비 반환에 동의합니다. | □ | □ |
| 법위반사실에 대해 위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 거짓으로 제출하여 선정된 경우 사업취소 및 사업비 환수, 3년간 도 전체 지원사업에서 제외됨을 고지 받고 이에 동의합니다. | □ | □ |

 |
| 공고문 및 신청 유의사항 등 관련내용을 확인 하였으며,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 중 허위기재, 증빙불가, 결격사유 등이 있는 경우 선정 취소 및 관련법령에 처벌 받을 수 있으며, 향후 경기도 지원 사업 선정에서 배제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2022년 월 일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귀하 |

**[제6호 서식]**

『2022 해외투자유치활동 지원 사업』

협 약 서

본 협약은 2022 해외투자유치활동 지원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진흥원’으로 한다)과 지원기업 간에 협약 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  |  |  |
| --- | --- | --- |
|  | **《사 업 개 요》** |  |
|  |  |
| ㅇ **기 업 명 :** (대 표 자 : )ㅇ **총지원금 :** 금 원 ※ VAT 제외ㅇ 협약**기간 :** 협약일 ∼ 20 년 월 일 |

**제1조(목적)** 본 협약서는『2022 해외투자유치활동 지원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경기도 중소기업, 외투기업 등의 비즈니스를 발굴 지원하여 투자유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준수의무)** ‘지원기업'은’진흥원‘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본 협약에서 약정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내용)** ‘지원기업’은『2022 해외투자유치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의 내용과 추진목표는 지원기업별 사업계획서에 정하는 바와 같다.

**제4조(협약기간)** 협약기간은 2022년 월 일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제5조(지원금 지급 및 관리)** ① ‘진흥원’은 협약 체결 후 지원금 원을 ‘지원기업'에게 지급한다.

② ‘지원기업'은 지급 받은 지원금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전용계좌와 카드로 사용 및 관리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지원기업'은 배부 받은 지원금을 ‘진흥원’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근거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당초 사업계획서와 다르게 지원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진흥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지원기업’은 ‘진흥원’ 또는 ‘진흥원’이 지정하는 자의 사업현장 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⑤ ‘지원기업'은 ‘진흥원’으로부터 집행 잔액, 불인정 비용 등의 반환을 청구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성과 보고 및 정산)** ‘지원기업'은 사업완료와 동시에 최종보고서와 지원금 정산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진흥원’ 또는 ‘진흥원’이 지정하는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협약의 변경)** ‘진흥원’과 ‘지원기업’은 협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협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지원기업’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진흥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협약의 해약)** ① 협약을 기간 만료 전에 해약할 경우에는 ‘진흥원’과 ‘지원기업’ 간 협의에 의한다.

②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으며, 협약이 해약된 경우에 ‘지원기업'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조례 또는 각종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위반한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과제 수행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3. 지원금을 부적정하게 집행 또는 본 사업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공익을 위하여 이 협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③ 제2항에 의해 본 협약을 해약하는 경우에 ‘진흥원’은 지급한 지원금 전액 또는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잔액 및 이자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원기업'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지원기업'은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원금의 집행 중지 및 현장 실태조사 등의 조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9조(해석)** 이협약서 상의 용어에 대한 해석은 ‘진흥원’과 ‘지원기업'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진흥원’의 해석에 따른다.

**제10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지원기업'은 본 협약과 관련된 권리나 의무를 ‘진흥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결과물의 활용)** ‘지원기업’은 본 과제의 결과를 공개하거나 발표할 경우 본 과제가 경기도 지원으로 수행된 것임을 밝혀야 한다.

**제12조(협약의 준수 등)** ‘지원기업'은 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성실히 행하여야 하며,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진흥원’과의 사전협의 없이 일체의 행위를 일방적으로 할 수 없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협약 취지에 맞도록 우선 처리한 후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협약의 효력 등)** ① 본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② 이 협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진흥원’과 ‘지원기업'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  |  |
| --- | --- | --- |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원 장** | **(인)** |
|  |  |  |
| **(지원기업)** | **(대 표)** | **O O O (인)** |

**[제7호 서식]**

|  |
| --- |
| **『해외투자유치활동 지원 사업』 지원금 교부신청서** |
| **1. 사업 개요** |
| 사 업 명 | 해외투자유치활동 지원 사업 |
| 과 제 명 |  |
|  |
| **2. 지원기업 개요** |
| 기 업 명 |  | 대표자명 |  |
| 사업책임자 |  | 전화/팩스  | / |
| 휴 대 폰 |  | 이 메 일 |  |
| 주 소 |  |
|  |
| 3**. 지원금 신청 개요** |
| 사업기간 | 2022. 0. 0 ~ 2022. 11. 30 |
| 지 원 금 | 원 |
| 계좌번호 | OO은행, 123-456-789, 예금주) OOO |
| 붙 임 | 1. 협약서 2부[제6호 서식]2. 사업계획서 1부[제2호 서식]3. 통장사본 1부4. 사업자등록증, 국세ㆍ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5. 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끝. |
| 상기와 같이 사업추진에 따른 지원금 교부를 신청합니다.2022년 월 일소 속 기 관 장 : \_\_\_\_\_\_\_\_\_\_\_\_\_\_\_ (인)(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귀하 |

**[제8호 서식]**

『해외투자유치활동 지원 사업』

지원금 청렴사용서약서

|  |  |  |  |  |  |  |
| --- | --- | --- | --- | --- | --- | --- |
| 위 “2022 해외투자유치활동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경기도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경기도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경기도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  |  |
| --- | --- | --- |
|  |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
|  |  |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

2022. 3. .기업명 대표 (서명/인)기업명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인)기업명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인)**경기도지사 귀하** |

**[제9호 서식]**

|  |
| --- |
| 『해외투자유치활동 지원 사업』변경승인 요청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문서번호 |  |  | 선결 | 원장 |  | 지시 |  |
|  |  |  | 접수 | 일시 |  | 결재ㆍ공람 | 본부장 |  |
| 수 신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  | 번호 |  | 부서장 |  |
| 참 조 | 클러스터육성팀장 |  | 처리과 |  |  |  |
|  |  |  | 담당자 |  |  |  |
|  |  |  |  |  |  |  |  |  |
| 제 목 | **(과제명 작성) 변경 승인 신청** |

해외투자유치 지원사업 수행 과제와 관련하여 협약서상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오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 청 자 : *O O O (업체명 : )*

2. 변경내용 :

3. 변경사유 :

붙임 : 변경사업 계획서 - 1부. 끝.

20 년 월 일

기업명 : (인)

**[제10호 서식]**

|  |
| --- |
| 『해외투자유치활동 지원 사업』사업참여 포기신청서 |

|  |  |
| --- | --- |
| 기업명 |  |
| 과제명 |  |
| 연락처 |  | e-mail |  |
| 포기사유 |  |
| 상기 본인은 해외투자유치활동 지원 사업 참가기업으로 상기 사유로 인하여 해외투자유치 지원사업 참여를 포기하게 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지원금 전체를 지급받지 않거나 반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20 년 월 일위 신청인 (인)**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귀하** |

**[제11호 서식]**

**20 년** 『해외투자유치활동 지원 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예시)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지 원 금

(단위 : 원, %)

|  |  |  |  |  |  |
| --- | --- | --- | --- | --- | --- |
| **구 분** | **예 산 액** | **지 출 액** | **집행잔액** | **이 자****발생액** | **비 고** |
| **금액** | **비율** |
| 계 |  |  |  |  |  |  |
| 지원금 |  |  |  |  |  |  |

202 년 월 일

제출자 : 기업명

대표자 (직인)

|  |
| --- |
| ❍ 실무책임자 : 직위 , 성명❍ 연 락 처 : 전화 , FAX , E-mail❍ 주 소 : (우편번호) |

※ 첨부서류

① 지원사업 추진실적 1부 ② 자금집행 정산보고서 1부

③ 영수증ㆍ세금계산서 사본 각 1부 ④ 제품 등 관련사진 1부

⑤ 기타 각종 증빙자료 1부

|  |  |
| --- | --- |
| 1. | 20 년 『해외투자유치활동 지원 사업』 추진실적 |

**사업개요(요약)**

|  |  |
| --- | --- |
| 기 업 명 | (대표자 : ○○○) |
| 과 제 명 |  |
| 협약기간 | . . ~ . .  |
| 지 원 금(계획액) | 총 천원  |
| 추진목적 | o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 추진실적 | o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추진성과 | o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국가, 기업, 시민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
| 성과(물)활용계획 | o (사업을 통하여 나타난 성과 또는 성과물을 향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 |
| 문제점 및 건의 | o |

※ 작성분량 : 1쪽 이내로 작성

계획 대비 추진실적

|  |  |  |  |
| --- | --- | --- | --- |
| **구 분** | **추 진 계 획** | **추 진 실 적** | **비고** |
|  | o-- | o--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

o 실행계획서상의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가급적 계량화·도식화하여 작성(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

**사업추진성과**

o

※ 지원기업 또는 외부기업(용역)의 참여정도, 사업에 대한 홍보실적, 투입 대비 산출의 비교분석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

**자체평가**

o

※ 사업추진결과 잘된점, 부진한 점,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 방안 등

**󰊵** 개선 및 건의사항

o

|  |  |
| --- | --- |
| 2. | 『20 년 해외투자유치활동 지원 사업』 지원금 정산보고서 |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

|  |  |  |  |  |  |
| --- | --- | --- | --- | --- | --- |
| **구 분** | **예 산 액** | **지 출 액** | **집행잔액** | **이 자****발생액** | **비 고** |
| **금액** | **비율** |
| 계 | 10,000,000 | 9,500,000 | 95 | 500,000 | 7,000 | 예시 |
| 지원금 | 10,000,000 | 9,500,000 | 95 | 500,000 | 7,000 |  |

※ 지원금 교부시 제출ㆍ승인된 사업실행계획서를 기준으로 총지원금, 집행액과 집행잔액을 기록

**지원금 집행현황**

**세부내역별 집행현황**

(단위 : 원)

|  |  |  |  |  |  |
| --- | --- | --- | --- | --- | --- |
| **세부내역** | **사업일시** | **내 역** | **당초집행****계획액** | **실제 집행내역** | **잔 액** |
| **산출기초** | **집행액** |
| 합계 |  |  |  | 예시 |  |  |
| ○○세미나 | 7.1014:00 | **계** | **6,980,000** |  | **3,550,000** | **430,000** |
| 현수막 | 2,500,000 | 230,000\*10개 | 2,300,000 | 200,000 |
| 자료집 | 3,400,000 | 8,000\*400부 | 3,200,000 | 200,000 |
| 장소임차료 | 1,080,000 | (2,000\*500명)+(50,000\*1명) | 1,050,000 | 30,000 |
| ○○○캠페인 | 8.15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당초 집행계획은 실행계획서상 예산집행계획의 단위사업건별로 내용을 기입하고 실제집행내역부분은 계획과 대비하여 비목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여함

**지원금 집행 세부내역**

**❍ 세부내역 : (A) × × × 세미나**

(단위 :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출****일자** | **인출액** | **비목** | **내역** | **지출****일자** | **지출액** | **지급처** | **지출****번호** | **지급방법** |
| 7.5 | 1,020,000 | 인쇄비 | 세미나자료집 | 7.5 | 500,000 | 창성인쇄 |  | Check카드 |
|  |  | 강사료 | 세미나주제강사 | 7.5 | 300,000 | 홍길동외2 |  | 계좌입금 |
|  |  | 원고료 | 자료집 원고 | 7.6 | 200,000 | 홍길동외2 |  | Check카드 |
|  |  | 진행비 | 세미나 사무용품 | 7.6 | 20,000 | 행복문구 |  | Check카드 |
| 7.10 | 500,000 |  |  |  |  |  |  |  |
|  | 000 |  | × × × |  |  |  |  |  |
|  | 000 |  | × × × |  |  |  |  |  |
| 7.20 |  |  |  |  |  |  |  |  |
|  |  |  |  |  |  |  |  |  |
| 8.20 |  |  |  |  |  |  |  |  |
|  |  |  |  |  |  |  |  |  |

**❍ 세부내역 : (B) ◇◇◇캠페인**

(단위 :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출****일자** | **인출액** | **비목** | **내역** | **지출****일자** | **지출액** | **지급처** | **지출****번호** | **지급방법** |
| 계 |  |  |  |  |  |  |  |  |
| 8.10 | 460,000 | 인쇄비 | 캠페인리플렛 | 8.11 | 300,000 | 창성인쇄 |  | Check카드 |
|  |  | 진행비 | 캠페인 현수막 | 8.11 | 100,000 | 가나광공 |  | Check카드 |
|  |  | 인건비 | 자원봉사자인건비 | 8.11 | 60,000 | 김지혜외1 |  | 계좌입금 |
| 8.20 | 300,000 |  |  |  |  |  |  |  |
|  | 000 |  | × × × |  |  |  |  |  |
|  | 000 |  | × × × |  |  |  |  |  |
| 8.25 |  |  |  |  |  |  |  |  |
|  |  |  |  |  |  |  |  |  |
| 9. 1 |  |  |  |  |  |  |  |  |

※ 내부품의서, 지출결의서, 각종 영수증, 회계장부, 통장 등 세부증빙자료는 별도 편철 제출

☞ 제반 증빙자료가 없는 건에 대해서는 자료 각 건별로 사유서 첨부 제출

**<지급방법별 증빙자료>**

- Check카드 : 매출전표

- 계좌입금 : 은행입금전표, 세금계산서, 금전등록기 영수증, 간이세금계산서, 수령증 등

**지원금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  |  |  |  |  |  |  |
| --- | --- | --- | --- | --- | --- | --- |
| **단위****항목** | **세부내역** | **예산비목** | **예산액** | **지출액** | **집행잔액** | **발생사유** |
| 합 계 |  |  |  |  |  |  |
| (A)×××세미나 | **소 계** |  |  |  |  |  |
| 세미나 자료집 | 인쇄비 | 3,400,000 | 3,200,000 | 200,000 | 집행잔액 |
|  |  |  |  |  |  |
|  |  |  |  |  |  |
|  |  |  |  |  |  |
| (B)◇◇◇캠페인 | **소 계** |  |  |  |  |  |
|  |  |  |  |  |  |
|  |  |  |  |  |  |

※ 발생사유 : 계획변경, 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이자 등 기재

**사업 및 소요경비배분 변경내역 ☞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단위 : 원)

|  |  |  |  |  |  |
| --- | --- | --- | --- | --- | --- |
| **세 부 내 용** | **비 목** | **당초예산** | **변경예산** | **주요 변경사유** | **승인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승인여부 : 경기도 승인, 자체변경(내부 결재문서 사본 첨부)으로 구분 기재

**[별표 1]**

|  |
| --- |
| 『해외투자유치활동 지원 사업』사업지원 제외업종 총괄표 |

|  |  |  |
| --- | --- | --- |
| **업 종** | **품목코드** | **해 당 업 종** |
| 제조업 | `33402中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
| 33409中 |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도매 및 소매업 | 46102中 | 주류, 담배 중개업 |
| 46109中 |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
| 46209中 | 잎담배 도매업 |
| 46331, 3 | 주류, 담배 도매업 |
| 46416中 | 모피제품 도매업(인조모피제품 도매업제외) |
| 46463中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오락기구 도매업 |
| 47640中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오락기구 소매업 |
| 47859中 | 성인용품 판매점 |
| 47911中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오락기구, 성인용품도소매업 |
| 음식점 및 주점업 | 56211~2 | 일반(무도)유흥 주점업 |
|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 58122中 | 경마, 경륜, 경정관련 잡지 발행업 |
|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 5821中 |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 63999中 | 온라인게임아이템중개업, 게임아바타중개업 |
| 금융 및 보험업 | 64∼66 | 금융 및 보험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 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
| 부동산업 | 68 |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은 제외 |
| 산업용 기계 및 장비임대업 | 69390中 |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 전문서비스업 | 71531中 | 기획부동산업\* |
| 사업지원 서비스업 | 75330中 | 흥신소 |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 75999中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 91113 | 경주장 운영업 |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 9122中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성인PC방,전화방 |
| 91249 |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
| 91291 | 무도장 운영업 |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9612中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 96992 |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 96999中 | 휴게텔,키스방,대화방 |

\* (운영형태)부동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개발가능성이 거의없는 지역의 임야나 농지를 대단위로 매수하여 소규모 단위(330㎡, 660㎡등)로 분할한 후, 다단계판매와 텔레마케팅(전화권유 판매)과 같은 조직적 판매망을 통해 부동산을 고가(시세의 3~5배)에 매도하는 업체